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설치 근거 상향 입법〉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27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최혁진 · 김원이 · 노종면 · 김남근 · 박해철
임미애 · 강준현 · 조인철 · 황명선 · 문금주 · 이광희
백승아 · 김 윤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 의안번호 : 124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6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의미하는 ‘전문위원’이라는 용어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6조의2).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전문위원</u> <u>회 위원의</u> ----- ----- -----. <u>제16조의2(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1)은 상임위원회와

1) 참고로,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내용은 2005. 7. 29.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시 신설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 및 전문위원회 위원²⁾의 자격·임기·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12개의 전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표-2] 전문위원회 구성 현황(2025. 8. 31. 기준)

구 분	위원장	위원 수(위원장 포함)
사회권전문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20명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13명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13명
지역인권전문위원회	이숙진 상임위원	11명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15명
정보인권전문위원회	김용직 비상임위원	17명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11명(임기만료 재구성 중)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31명(임기만료 재구성 중)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이숙진 상임위원	26명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이숙진 상임위원	29명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13명
군인권전문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10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7조³⁾는 위원회의 업무

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현행법에서는 ‘전문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전문위원’과 구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이라고 표현함.

3) 참고로,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은 2002. 2. 9.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시부터 존재하였음.

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 설치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전문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법률과 대통령령은 비록 효력 및 입법 절차에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령을 근거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전문위원을 둘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위원이 선임·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다고 하여 전문위원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⁴⁾ ②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위원)의 업무인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 사항의 연구·검토와 전문위원의 업무인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연구가 다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전문위원’이라는 용어의 혼동 문제는 전문위원을 선임·운영하지 아니하는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려움.

중복되어 보이는 점, ③ 비상임 신분인 전문위원회 위원⁵⁾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위촉되는 비상임 신분인 전문위원⁶⁾은 그 신분상 업무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5)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구성)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1. 성차별, 장애차별 등 차별분야, 수사분야, 교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분야, 국제인권분야, 아동청소년인권분야, 지역인권분야, 북한인권분야, 군인권분야, 정보인권분야, 그 밖의 인권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각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회의수당)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보수(봉급·수당 등)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상임 신분(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 위촉: 민간인)으로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임.